

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75 |
|----------|----|

제안연월일 : 2022. 11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됨
- 직접 수행시 석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며, 사업량 및 사업범위 증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
- 지속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관리·감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 가능

2. 위탁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
- 지방자치법 제104조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, 제5조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환경부)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

나. 위탁기간 : 2023년 ~ 2025년(3년간)

다. 사업량 : 주택 126동, 비주택 40동, 지붕개량 29동['23년 기준]

라. 사업비 : 841,640천원/년(국비 50%, 도비 10%, 군비 40%)

마. 위탁비용 : 67,300천원/년(사업비의 8%)

바. 위탁사무 내용

-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, 계약체결(공개경쟁입찰)
- 슬레이트,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
-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, 교육 실시
-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

사. 수탁자 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로, 슬레이트 해체·제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4. 추진실적

(사업량→동, 사업비→백만원)

| 구분 | 합계 | | | ‘20년 | | | ‘21년 | | | ‘22년 | | |
|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| 주택 | 비주택 | 지붕개량 | 주택 | 비주택 | 지붕개량 | 주택 | 비주택 | 지붕개량 | 주택 | 비주택 | 지붕개량 |
| 사업량 | 312 | 77 | 61 | 124 | 10 | 24 | 117 | 28 | 20 | 71 | 39 | 17 |
| 사업비 | 1,101 | 222 | 256 | 388 | 33 | 88 | 415 | 58 | 81 | 298 | 131 | 87 |

5. 위탁에 따른 경제성 검토(2022년 처리실적 기준 비교)

- ‘22년 철거물량에 위탁 단가 적용 시 발생비용 약 4백만원 감소
 - 자체 단가 : 면적조사/철거(20,309원/m), 처리(8,013원/m), 지붕개량(62,689원/m)
 - 위탁 단가 : 면적조사/철거/처리(25,400원/m), 지붕개량(65,400원/m), 수수료 8%

※ 위탁시 수수료가 발생하나, 면적조사 용역 비용 감소로 전체 사업비 절감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① 자체(현행) | ② 위탁(계획안) | 비고(②-①)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면적조사 및 철거비 | 306.17 | 382.93 | 감) 45.4 |
| 처리비 | 122.16 | | |
| 지붕개량비 | 87.42 | 91.20 | 증) 3.78 |
| 수수료 | - | 37.93 | 증) 37.93 |
| 합계 | 515.75 | 512.06 | 감) 3.69 |

6. 타지자체 위탁현황

○ 도내 11개(61%) 시·군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

| 위탁(11개 시·군) | 자체(7개 시·군) |
|---|---|
| 원주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철원군, 양구군, 인제군, 양양군 | 평창군, 춘천시, 강릉시, 영월군, 정선군(위탁예정), 화천군, 고성군 |

7. 추진계획

- 2022. 11월 : 민간위탁사업 의회 승인
- 2023. 2월 : 민간위탁 수탁사업자 모집 공고
- 2023. 3월 :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
- 2023. 11월 : 사업완료 및 정산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7조(계약사무의 위임·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, 중앙행정기관의 장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·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